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62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추미애 · 전현희 · 이성운
서미화 · 한정애 · 박은정
윤종균 · 부승찬 · 김기표
박해철 · 최혁진 · 박용갑
김준혁 · 이건태 · 위성곤
박지원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 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
- 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
- 사. 기금으로 용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4. “일반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를 말한다.
5.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를 말한다.
6. “국방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
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
출 진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부
터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차입금)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방위산업체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출자
 - 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 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 다.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 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 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 바.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
 - 사. 방위산업체의 운영

- 아.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자.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희화된 방위
산업물자등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 차.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방위산업체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
3. 방위산업체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4. 방위산업체등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외국정
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금
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사항을 위
하여 구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나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사업 관
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
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수탁기관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 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자

제17조(감독 및 명령)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6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

술료는 제외한다)의 10분의 1의 경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등 수출 진흥기금법」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로 한다.